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22호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580 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1586 호	무단방치(행방불명) 적치물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공시송달 공고	생 활 경 제 과	4
○ 공 고 제 1588 호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토 지 정 보 과	6
○ 공 고 제 1589 호	2023년 9월 취득세 공시송달	세 무 1 과	10
○ 공 고 제 1590 호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12
○ 공 고 제 1591 호	취득세 9월 공시송달	세 무 1 과	125
○ 공 고 제 1593 호	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연장공고	환 경 보 전 과	128
○ 공 고 제 1597 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생 활 경 제 과	146
○ 공 고 제 1605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47

고 시

○ 고 시 제 105 호	사방지 지정 고시	공 원 녹 지 과	150
○ 고 시 제 10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54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80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사망말소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31.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8.31. ~ 2023.9.15.
3. 공고대상 : 인천 연수다2558 외 3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및 폐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1	2023-00055	인천연수다2558	이륜차	구월로46번길 9	공명호 (사망말소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46번길 10, C동 201호(간석동, 모던하우스)
2	2023-00064	인천연수가4224	이륜차	경인로 587	변금식 (사망말소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 103동 307호(선학동, 선학시영아파트)
3	2023-00119	인천남동파8493	이륜차	구월동 201-160	차의신 (사망말소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6, 302호(구월동, 부원주택)
4	2023-00120	인천남동타2862	이륜차	호구포로 220	이재광 (사망말소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62, 203호(서창동, 은빛설레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86호

무단방치(행방불명) 적치물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강제철거 예고 및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31.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23.8.31. ~ 2023.10.04.(30일이상)
2. 대 상 물 품: 장승백이 전통시장내 무단방치 적치물(사진참고)
3. 견 인 일 시: 2023.10.04.이후
4. 공 고 내 용
 - 가. 적치물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 제3조 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강제 철거(수거) 될 수 있습니다.
 - 나. 강제처리 예고문을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032-453-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적치물(소유주:신창*) 현황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88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4.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준 일 : 2023.7.1.기준
- 기 간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대 상 : 276필지(2023.1.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 615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m ²	의견가격 원/m ²
	의견제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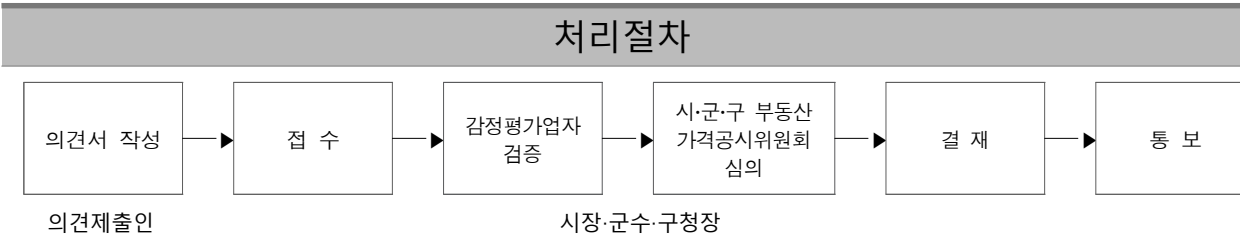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m ²			KRW/ m ²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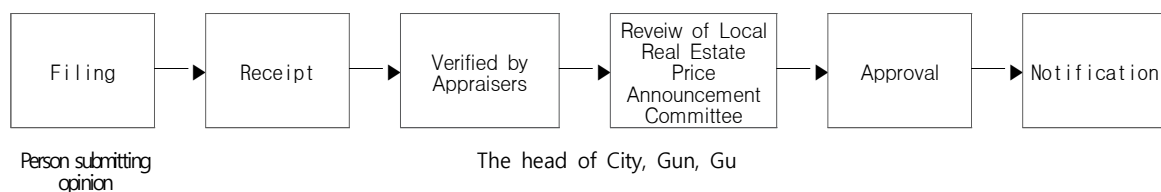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210mm×297mm(Woodfree Paper 80g/m²)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89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남**진
- 서류의 송달지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3.8.31.을 2023.9.30.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741202 -*****	남**진	28200	101501-2023-08-2-8 00-032843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8-08	폐문부재	6,300,23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90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	재 무 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 무 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세 무 1 과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과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2023. 9. 1.

남 동 구 청 장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14.(목)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과)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
(재무과)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무과)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세무1과)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과)
-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
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청소행정과)
-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5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설치주체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강화(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11조)
- 계약 체결시 공증의무 조항 삭제(안 제12조)
- 수탁기관 예산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 수탁기관 의무조항 신설(안 제14조)
- 수탁기관 성과평가 완료기간 단축(안 제20조)
- 수탁기관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항 신설(안 제2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를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로,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를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으로,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구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 “위탁사무 소관부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u>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 ----- <u>수탁기관</u> <u>선정심의위원회</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u>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u> 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제8조(<u>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u> 의 설치) ① ----- -----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1.2. (현행과 같음)

② -----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
되--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 다음 각 호의 사람 ----

-----.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
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구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
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
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

<신 설>

② (생 략)

제10조(간사)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으로 한다.<신 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사무 소관부서 -----.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

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

제12조 ~ 제14조 (생략)

<신설>

제15조 (생략)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0조(성과평가) ① -----

----- 90일 -

-----.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

【간석3동 더불어마을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취소】

의안 번호	2816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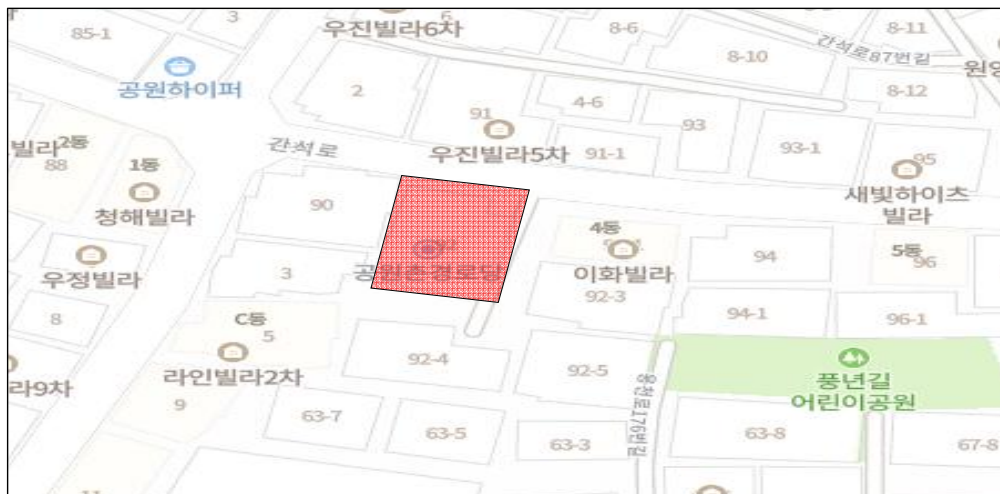
- 지역주민 간의 이해충돌(재생사업과 재개발민원 충돌)을 해소하면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등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석3동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방안 변경(신축→리모델링)
-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간석3동 더불어마을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취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 적
 - 주민 간 화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변경 : 2023.04.07.

구분	당초(신축)	변경(취소)	비고
위치	간석동 37-4번지 외 1	간석동 37-4번지 외 1	신축을 리모델링 으로 변경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감)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16.82㎡	감)816.82㎡	
총사업비	2,600백만원	감)2,600백만원	

○ 위치도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현황)

[남동구]

[단위 :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재지	건수	면 적	공사비가	예정가격	사유	비고
합 계			-1	-816.82		-2,600,000		
기 본 계 획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 조성)	간석동 37-4	-1	-816.82	-	-2,600,000	간석3동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 조성비	취소
		간석동 37-48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m ²)	금 액	건수	수량(m ²)	금 액	건수	수량(m ²)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1	-816.82	-2,600,000	-1	-816.82	-2,600,000	취소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	추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건물	간석동 37-4	-816.82	-816.82	-2,600,000	-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취소	소래로 633 남동구청장	신축사업 취소
		간석동 37-48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817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수는 충족하나 전기차 등 공용차량 구입 증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 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해 같은조 제2항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 적 :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및 구청사 내 친환경 충전 인프라 기반 마련
- 사 업 명 : 구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인천시 선정)
- 사업내용 : 급속 충전기 6대(100kw) 설치

구 분	충전 전력	설치대수	충전가능차량	위 치	비고
민원 전용	100kw	2대	동시 4대	구청 정문 앞	
민원,관용차 등	100kw	4대	동시 8대	별관(차량등록) 뒤	

- 운영방법
 - 수행업체 : (주)이지차저
 - 운영기간 :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5년(1회에 한해 연장가능)
 - 운영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 소요예산 : 부지사용허가 시 기타 제반비용 수행업체 부담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영 제18조의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영 제12조

☐ 위치도 등☐ 참고 자료

- 남동구청 충전기 현황 및 관련 법규 및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양 한 목

[참고자료1]

☐ 남동구청사 전기차 충전기 현황

구 분	총 주차면수	완속충전시설		급속충전시설		합 계	의무 설치	충족 여부	비 고
		수 량	용 량	수 량	용 량				
구청 부설주차장	366	11대	7kw	0	0	11대	대상	충족	

☐ 설 치 (안)

1. 본청 정문 앞 : 신규 2대(100kw*2) 설치 (4대 동시 충전가능)
 2. 별관(차량등록) 뒤 : 신규 4대(100kw*2) 설치(8대 동시 충전가능)
 - 기존 완속 충전기 총 11대 중 6대 폐기, 5대 존속(설치 2020년)
- ※ 100kw 전기 충전기 - 1대 충전 시 100kw, 2대 충전 시 각 50kw

구 분	총 주차면수	완속충전시설		급속충전시설		합 계	의무 설치	충족 여부	비 고
		수 량	용 량	수 량	용 량				
구청 부설주차장	366	5대	7kw	12대 (6대)	100kw	17대	대상	충족	

- () 급속충전기는 듀얼로 동시 충전가능(급속은 최대출력이 40kw 이상)
- 듀얼 급속충전기 1대는 충전기 2대로 산정

[참고자료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안 번호	2818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남동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②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 세목별 감면내용
 - ①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 ②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 부과되는 구세(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없음(2023.7.25.일 기준)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박 종 철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략)
- ④ ~ ⑦ (생략)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19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안 제2조)
- 기능 (안 제3조)
- 조직 및 구성 (안 제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안 제6조)
- 지도·점검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지역 주민 대표
3. 청소년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 경 미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3. 11. 29.]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20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위탁 운영
- 위탁시설

센 터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일	비고
(가칭)구월힐캐슬 아이함께자람터 (남동구 7호점)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1단지)	100.88㎡	30명	3명	2023.12월 (예정)	무상임대 (5년)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3.12.1.~'28.11.30. 예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아동 모집 및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관리
- 소요예산 : 639,015천원(5년)(국비50%, 시비25%, 구비25%)

□ 동의사항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문(안) 1부.
- 붙임3 : 관련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보건복지부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12월 ~ 2028년 12월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12월 ~ 2028년 12월
- 발생비용 : 639,01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및 운영비 : 국비50%, 시비25%, 구비25%
-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 시비50%, 구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김 종 수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658	88,038	89,004	89,984	90,979	91,989	457,652
국비보조금		3,479	42,259	42,803	43,355	43,915	44,484	220,295
시비보조금		4,179	45,779	46,201	46,629	47,064	47,505	237,357
세 출		11,047	122,776	124,164	125,573	127,003	128,454	639,015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11,047	122,776	124,164	125,573	127,003	128,454	639,015
재원 조달		11,047	122,776	124,164	125,573	127,003	128,454	639,015
의존 재원	소 계	7,658	88,038	89,004	89,984	90,979	91,989	457,652
	보조금							
	국비	3,479	42,259	42,803	43,355	43,915	44,484	220,295
	시비	4,179	45,779	46,201	46,629	47,064	47,505	237,357
	지방 교부세	-	-	-	-	-	-	-
	조정 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389	34,738	35,160	35,588	36,023	36,465	181,363
	구 비	3,389	34,738	35,160	35,588	36,023	36,465	181,363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인건비(종사자 호봉승급)는 연간 인상률(1.5%) 적용 추산
- 운영비는 2023년도 지원기준 반영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 센터 운영비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인건비(종사자 3명), 운영비		120,007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59,784천원 -센터장 : 2,584천원×1명×12월 -시간제돌봄교사 : 1,199천원×2명×12월 [제수당] 26,410천원 -임금보전수당 16,502천원 -가족수당 480천원 -명절수당 7,628천원 -정액급식비 50천원×1명×12월=600천원 -관리자수당 100천원×1명×12월=1,200천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복지포인트 150천원×1명×2회=300천원 -건강검진비 200천원×1명×1회=200천원 [4대보험] 9,631천원 -86,194천원×11.174%=9,631천원 [퇴직금] 7,182천원 -86,194천원×1/12=7,182천원	- 센터장 1명 - 시간제돌봄교사 2명	103,507
운영비	[운영비] 15,600천원 -1,300천원×12월=15,600천원 [학습환경지원] 900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학습환경지원 등	16,500

[참고자료1]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추진경과

-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설치장소 공모계획 수립 : 2023. 4. 25.
- 공동주택 대상 센터 설치장소 공모 실시 : 2023. 5. 8.
- 공동주택 내 설치장소 공모 결과 보고 및 통보 : 2023. 6. 12.
⇒ 1개소 신청 및 선정(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아파트)
- 행위(용도변경) 신고 및 처리완료 : 2023. 6. 27.
- 무상임대 협약식 개최 : 2023. 7. 18.

IV

위탁개요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가칭)구월할개슬 아이함께자람터(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 소 재 지 : 남동구 구월로 192(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1단지)
- 규 모 : 100.88㎡(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등)
- 정 원 : 30명 (아동 1인당 3.3㎡이상)
- 종사자수 : 3명(센터장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 주요사업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제공

【 센터 운영 개요 】

- ▶ 이용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월 ~ 금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4:00 ~ 20:00, (방학중) 09:00 ~ 18:00
 - ※ 종사자 근무시간 :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
- ▶ 운영내용 : 정기돌봄(일정기간이 정해진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 시 돌봄)
 - 돌봄프로그램 운영, 출결관리, 숙제지도, 휴식, 특기적성, 급·간식 등
- ▶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월 100천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 개소예정일 : 2023. 12월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 인건비 : 센터장 월3,089천원, 시간제돌봄교사(2명) 월1,434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 : 월 1,000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자체) : 월300천원(구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 개인별 호봉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상이(시50:구50)
- 수익자부담 수입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내
- 후원금, 전입금 등

②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3.12.1.~2028.11.30.예정)

※ 단, 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과의 무상임대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시 위탁기간은 해당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공동주택과의 무상임대 협약사항>

센 터 명	임 대 인	임 차 인	사 용 기 간	비 고
(가칭)구월힐캐슬 아이함께자람터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입주자대표회의장	남동구청장	'23.9.1.~'28.8.31. (5년)	협약 갱신

③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④ 위탁절차 ※ 모집 재공고시 일정 변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	의회 보고	모 집 공 고 및 홍 보	신 청 접 수	수 탁 자 선정심의 위 원 회	협약체결	위탁개시
8월중	9월 (제288회)	9.15.~9.30. (15일간)	10.2.~10.5. (3일간)	11월 중	11월 중	12월

V

세부추진계획

① 민간 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근 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시 기)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 9. 12. ~ 9. 14.)

②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2023. 9. 15.(금) ~ 9. 30.(토) (15일간)
- (접수기간) 2023. 10. 2.(월) ~ 10. 5.(목) (3일간)
- (접수장소) 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단,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재공고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모집결과 신청기관 없을시 신청자격을 수도권으로 확대 예정
- ※ 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해지 법인 신청 불가
- (종사자의 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1의2]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센 터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및 심의

- (구성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회 구성) 위원수 ○인(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 추천 의뢰(비공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11월 중 (일정 추후협의 결정)

- 심의내용 : 심의기준(안) 결정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에 따라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평가

○ 선정항목 및 비율(안)

구 분	계	수탁자 공신력	재정능력	운영능력	책임자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배 점	100점	10점	15점	20점	20점	35점

※ 세부심사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심의기준별 항목간 배점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감점(최대5점) : 비위사실(행정처분) 있을 경우

○ 선정 방법(안)

- 작성된 신청법인의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이 검토
- 심사 시작 前에 심사기준 및 배점표, 선정방법 등 심의 및 결정
- 심의위원별로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채점 실시
- 심의위원 각자가 채점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
-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신청법인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여부 결정
- 심의절차

① 선정심의 방법안내	·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설명 ⇒ 간사
↓	
② 선정방법 및 심사표 결정	· 참석위원 협의하에 선정방법, 심사기준 및 배점표 결정 ⇒ 위원 모두
↓	
③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접수순)	· 법인대표 또는 센터장 예정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센터 운영 의지 등 발표 청취(10분이내) · 법인대표 또는 센터장 예정자에게 사업 비전제시 등 위원 질의응답 실시(10분이내) ⇒ 위원 모두
↓	
④ 채점 실시	· 심사기준표에 의거 신청법인별 채점 및 합산 ⇒ 위원 모두
↓	
⑤ 채점결과 검산.확인	· 심의위원 개인별 채점표 검산 및 확인 ⇒ 간사
↓	
⑥ 심사의결서 서명	· 최종 집계된 심사결과 위원 모두 서명확인 ⇒ 위원 모두
↓	
⑦ 선정법인 발표	· 선정법인 발표 ⇒ 위원장

- 참석수당 : 100천원 범위 내 (1인 기준 / 공무원 제외)

참석수당	기본(2시간)	추가	비고
지급액	70,000원	30,000원	초과는 1일1회만 지급

④ 선정결과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위탁계약 체결 : 2023. 11월중

V

향후일정(안)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3. 8월중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9. 15.(금) ~ 10. 5.(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중
- 위탁운영 협약체결 : 2023. 11월중
- 위탁 개시 : 2023. 12월 예정

[참고자료2]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을 위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9. .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센 터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 예정일	비고
(가칭)구월힐캐슬 아이함께자람터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1단지)	100.88㎡	30명	3명	2023.12월	무상 임대 (5년)

※ 종사자 : 센터장 1명(상근직), 시간제 돌봄교사 2명(1인 4시간 근무)

2.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023. 12. 1. ~ 2028. 11. 30. 예정)

3.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아동 모집 및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관리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등

【 센터 운영 개요 】

- ▶ **이용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월 ~ 금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4:00 ~ 20:00, (방학중) 09:00 ~ 18:00
 - ※ 종사자 근무시간 1일 최대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 ▶ **운영내용** : 정기돌봄(일정기간이 정해진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 시 돌봄)
 - 돌봄프로그램 운영, 출결관리, 숙제지도, 휴식, 특기적성, 급·간식 등
- ▶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월 50천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4. 운영재원(2023년 기준)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및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름

- 정부지원 보조금
 - 인건비 : 센터장 월3,089천원, 시간제돌봄교사(2명) 월1,434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 : 월 1,000천원(국50:시25:구25)
 - 운영비(자체) : 월300천원(구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 개인별 호봉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상이(시50:구50)
- 수익자부담 수입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내
- 후원금, 전입금 등

5. 위탁운영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계약서에 의함
- 인천시와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남동구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공간 및 장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향후, 시설 무상임대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시 위탁기간은 해당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함

※ 공동주택과의 시설 무상임대 협약사항(공고일 현재)

센 터 명	임 대 인	임 차 인	사 용 기 간	비 고
(가칭)구월할캐슬 아이함께자람터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구월힐스테이트&롯데 캐슬골드업주사대표이사	남동구청장	'23.9.1.~'28.8.31. (5년)	협의 갱신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개소 전까지 개소 및 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6. 위탁법인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센터장의 자격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1의2])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센 터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3. 9. 15.(금) ~ 9. 30.(토) (15일간)
- 접수기간 : 2023. 10. 2.(월) ~ 10. 5.(목) 18:00까지(3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 가. 신청서(소정양식) : 10부
- 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10부
- 다. 법인정관 : 10부
- 라. 법인일반현황 : 10부
- 마. 법인재산현황 : 10부

- 바. 사업실적 및 법인결산서(2020년 ~ 2022년) : 10부
- 사. 연도별 자부담출연계획서 : 10부
- 아.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10부
- 자. 시설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 10부
- 차. 조직(기구표), 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 10부
- 카. 법인대표 이력서 : 10부
- 타. 시설장 예정자 현황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10부
- 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사본 (지도·감독부서, 감사부서) : 10부
- 하.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 10부
- ※ 위 순서(가~하)에 따라 1권으로 제본(A4규격, 페이지번호 부여) 10부 제출
- ※ 신청서 및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 원본으로 1부씩 제출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시 발표할 자료(ppt 및 요약본)는 신청서 접수시 별도 제출(전자제출)

10. 심사 및 선정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수탁자의 공신력(10점) : 설립목적, 목적사업
 - 수탁자의 재정능력(15점) : 자부담 지원계획, 자산 보유현황
 - 운영능력(20점) : 법인사무실, 인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과거 3년간 기여도
 - 책임자 적정성(20점) : 법인대표 및 센터장예정자 자격증/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운영의지
 - 사업수행능력(35점) : 종사자 인적활용 및 역량강화, 사업계획 실현성 및 타당성, 지역사회네트워크 및 특수성 반영, 프로그램 적정성
 - 비위사실 여부 : 행정고발, 행정처분 여부 확인후 있을시 감점(최대5점) 처리
- ※ 항목별 배점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 신청법인별 사업계획을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발표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최고 득점자 순 (소수점 두자릿수까지 계산)
 - ※ 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 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단축함
 -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11.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심사당일

○ 방 법 : 남동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법인에게 개별통지

12. 협약체결

○ 기 한 : 2023. 11월 한

○ 선정된 법인이 협약체결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13.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추가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함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前에 신청안내문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구의 해석에 따름

○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식은 남동구청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032-453-5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1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비 및 오타 수정 : (안 제2조, 제5조의2, 제8조)
-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 정비 : (안 제4조)
-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 현행화 :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5조의2)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범위 수정 : (안 제6조,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재정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납부금액의 납부방법)”을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 중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으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치납부금액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제8조 중 “월하여”를 “이월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의 비율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 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 하는 자 중 그 택지등에서	<삭 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
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
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
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
되는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 시설 1톤당 소
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
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
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
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
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
적 : 제1호나목 규정에 의
하여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
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 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

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 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
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
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
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신 설>

----- “특별회계”--
-----.

제5조의2(존속기한) ① -----
----- 2028년 12월 31일
-----.

② 남동구청장-----

-----.

제6조(세입) -----
-----.

1. 설치납부금액

2. (현행과 같음)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
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세출)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
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

	<u>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u> <u>으로의 예탁금</u>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	제8조(예산의 이월) -----
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	-----
에 <u>이월하여</u> 사용할 수 있다.	- <u>이월하여</u>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발의하는 의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박 홍 순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

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자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2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조항 추가 : (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 추가 : (안 제3조, 별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신설 조항(제22조, 제3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때에는[별표]”을 “때에는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영업의 양도, 상속,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구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 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역보건법</u> 」 제34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보건법</u> 」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u>지역보건법</u>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 대상자는 「 <u>지역보건법</u> 」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 때에는 <u>별표</u>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 찬 우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3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삭제 (안 제4조제1항)
 - 어린이놀이터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 (안 제4조제1항)
 - 의료기관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제6조제1항 전단 중 “안내표지판을”을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터, 제4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1. ----- ----- -----말한다) 2. ~ 7. (현행과 같음) 8. <u>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u>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u>안내표지판</u> 을 설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금</u>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 ----- ----- ----- <u>안내판표지판</u> 등 <u>안내표지</u> 를 ----- . <후단 삭제

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터, 제4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심 미 향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4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 변경 (안 제7조제1항)
 - 1일(4시간)당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신설 (안 제9조)
-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성별란 추가 (안 별지제1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하며,”를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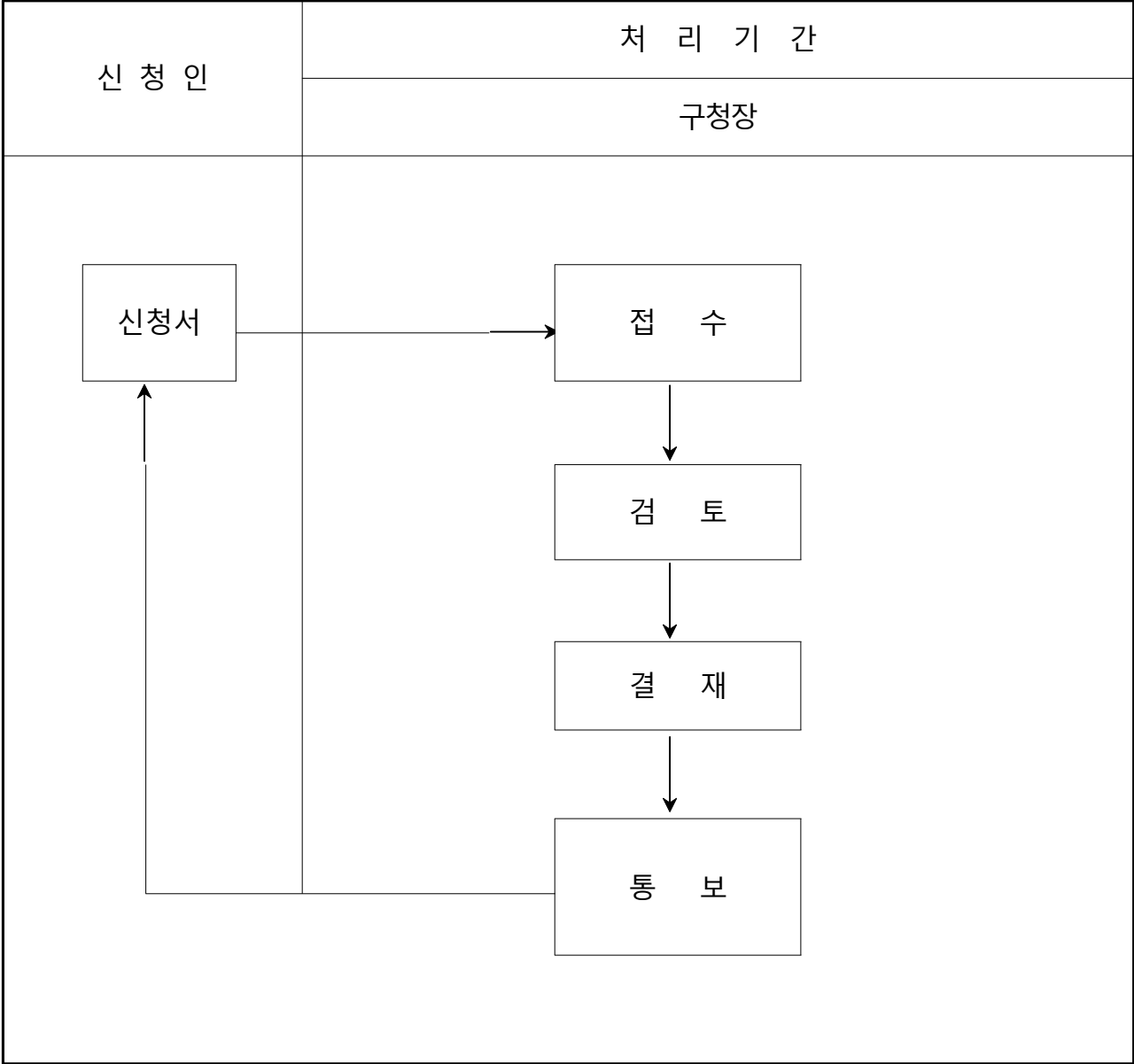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 활동수당을 ----- ----- ----- ----- ----- ---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심 미 향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위촉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의 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위촉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촉 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91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대	상	김**영 외 22인 (중복 제외)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납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등기번호	비고
1	620620--*****	김*영	101501 202308 2 551 032925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95154596	공동납세자
2	921118--*****	안*진	101501 202308 2 650 032627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85688536	
3	810217--*****	장*석	101501 202308 2 710 029728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85688535	
4	820318--*****	박*표	101501 202306 2 551 021689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95154580	
5	350910--*****	지*숙	101501 202306 2 550 021781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85688561	공동납세자
6	830624--*****	장*일	101501 202306 2 550 026518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85688552	
7	681213--*****	신*석	101501 202306 2 540 026514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8-10	5 수령인 없음	1072885688544	

공시송달 내역(과세예고 통지)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송달내용	등기번호	공고사유	비고
1	781230--*****	정*자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1072895154558	5 수령인 없음	
2	610820--*****	오*동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1072895154567	5 수령인 없음	
3	750517--*****	정*숙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1072895154557	5 수령인 없음	
4	620113--*****	조*우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1072895154551	5 수령인 없음	
5	581012--*****	조*현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1072895154550	5 수령인 없음	
6	380602--*****	배*선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1072895154549	5 수령인 없음	
7	820318--*****	박*표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80	5 수령인 없음	
8	731215--*****	김*배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603	5 수령인 없음	
9	911101--*****	김*성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602	5 수령인 없음	
10	581117--*****	김*이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99	5 수령인 없음	
11	620620--*****	김*영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96	5 수령인 없음	
12	750410--*****	이*규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95	5 수령인 없음	
13	620726--*****	김*숙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90	5 수령인 없음	
14	600321--*****	김*순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89	5 수령인 없음	
15	350910--*****	지*숙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88	5 수령인 없음	
16	841110--*****	박*나	취득세 미신고자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1072895154581	5 수령인 없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93호

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연장)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나. 사업기간 : 2023. 8. ~ 12. (또는 예산소진시까지)
- 다. 총사업비 : 72,450천원(국비 40,250, 시비 16,100, 구비 16,100)
- 라. 지원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신청자 자부담 10%)

2. 지원대상 및 조건

- 가. 지원대상 : 20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 약 22대 지원
- 나. 제외대상
 - 15년 이상 운영한 노후화가 심한 가스열펌프(GHP)의 경우
 - 초·중·고 및 국·공립 대학·유치원 등 타 기관 지원대상 시설의 경우

※ 15년 이상 운영하여 노후화가 심한 시설의 경우 저감장치 성능 유지 문제로 선정 제외 및 시설 교체 권고

다. 선정기준 : ① 노후화된 시설 ② 설치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

라. 지원조건 : 관련 고시*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설치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 16.)

마.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

바. 지원금액 : GHP 엔진형식별 지원금 상이(VAT 포함)

(단위 : 천원)

GHP 엔진형식	설치비 (A=B+C)	보조금 지원금(B)			자부담(C)
		계	국 비	지방비	
삼성 3Y/4Y 500	3,199	2,880	1,600	1,280	319
삼성 3Y 800	3,089	2,781	1,545	1,236	308
LG NU	2,739	2,466	1,370	1,096	273
LG D4BB	3,248	2,923	1,624	1,299	325
삼천리 850K	3,691	3,322	1,846	1,476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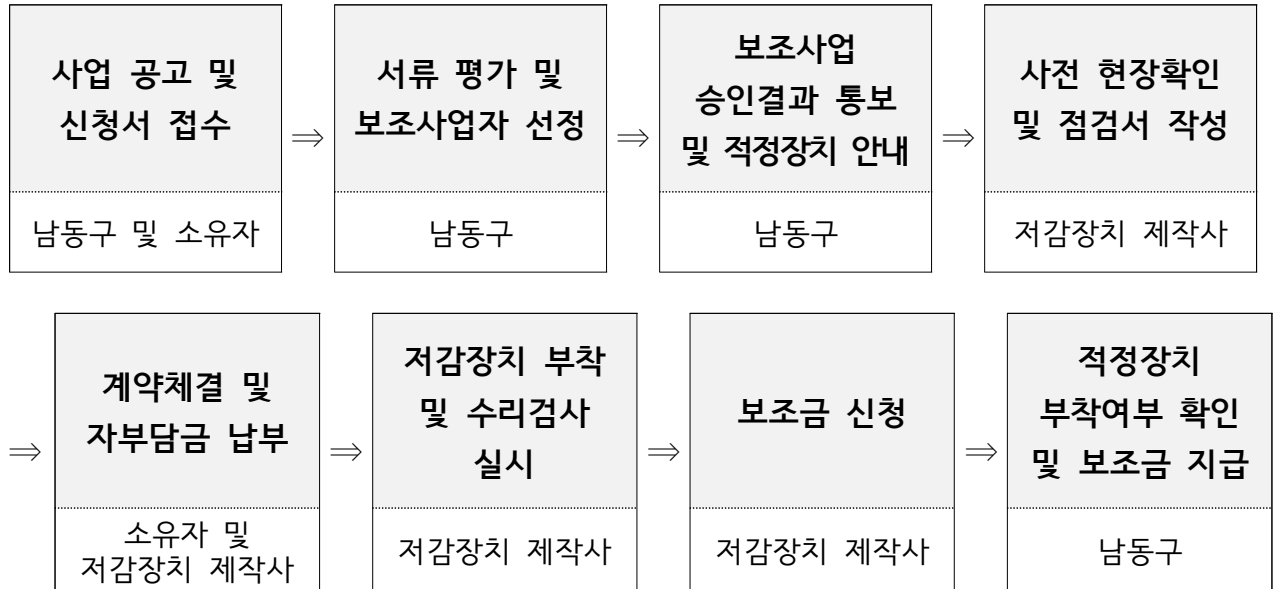
주1)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및 자부담 변동 가능
주2) GHP 수리검사 비용 포함

사. 유의사항

- 신청 전 인증(계획 포함)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저감장치 제작사에 확인 후 신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 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
- 사후관리 검사 3회 이상 부적합 시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 저감장치 탈거명령 및 보조금 회수

※ 20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2025. 1.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관련 법에 따른 운영·관리 의무 부여(단, 배출허용기준 30% 미만 배출 또는 인증 받은 저감장치 부착 시 신고대상 제외)

3. 사업절차



4. 사업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8. 9.(수) ~ 8. 31.(목)

연장기간 : 2023. 9. 1.(금) ~ 9. 15.(금)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신청서 총 1부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다. 접 수 처 :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라. 구비서류

- ①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 ② 이행확인서 [서식 2]
- ③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서식 3]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4]
-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⑦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해당시, 소유권 확인용)

5.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저감장치 부착

- 가.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선정기준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나. 선정통보 : 선정결과 및 적정 장치 공문 등으로 안내
- 다. 계약체결 : 소유자 및 저감장치 제작사 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시 소유자 자기부담금 납부
- 라. 부착기간 : 적정 장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자기부담금 납부일로부터 60일 경과시까지 미부착 시 사업 승인 취소

6. 보조금 지급

- 가. 지급대상 : 저감장치 제작사(소유자 위임장 제출 필요)
- 나. 지급조건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내역 일치, 수리검사 합격증명 등 확인 시

다.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식 5]
-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서식 6]
 -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포함 [서식 6-1]
- ③ GHP 수리검사 합격증명서(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 ④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 GHP 제조사와 저감장치 부착사가 동일할 경우 제조사의 자체 하자(AS)보증서로 대체 가능
- 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증권
- ⑥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서식 7]
- ⑦ 시설소유자 위임장 [서식 8]
-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⑨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⑩ 보조금 반납 약속서 [서식 9]

7.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가. 회수조건 : 시설 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단,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미가동은 예외
나. 회 수 율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주1) GHP 사용기간은 냉동기 검사(GHP 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주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더함
주3)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다. 사후관리 : 저감장치 설치 익년부터 2년간 의무운영 및 사후관리 대상,
사후관리 검사 3회 이상 부적합 시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
탈거명령 및 보조금 회수

8. 추진일정

- 가. 신청서 접수 : 2023. 8. 9.(수) ~ 9. 15.(금) 18:00
나. 서류검토 및 심사 : 2023. 9월 중
다. 선정대상 통보 : 2023. 9월 말 개별 통지 예정

9.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신청서류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 사항 착오·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3.0)」 및 남동구청 환경보전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환경부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8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저감장치 제작사	가능모델			연락처
	제조사	엔진형식	모델명	
LG전자(주)	LG	Nu	GPUW161C2S.AKM , GPUW201C2S.AKM GPUW251C2S.AKM	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2-2673-0361 충청/전라/경상 042-388-0511
		D4BB	GPUW161B2S.AKM , GPUW201B2S.AKM GPUW251B2S.AKM , GPUW301B2S.AKM GPUW161B2S.AKOR , GPUW201B2S.AKOR GPUW251B2S.AKOR , GPUW280C2S.AKM GPUW300C2S.AKM , GPUW320C2S.AKM	
삼성전자(주)	삼성	3Y/4Y 500	AM160NXGGBH1 , AM200NXGGBH1 AM250NXGGBH1 , AM300JXGGBH1 AM320NXGGBH1 , AM160HXGGBH1 AM160HXGGBH3 , AM200HXGGBH1 AM250HXGGBH1 , AM250HXGGBH3	1588-1351
(주)삼천리ES	삼천리	4GPK88-HU	KNCP850K1 , KNCP710K1	02-368-3497
(주)이알 인터내셔널	삼성	3Y	AM160HXGGBH1 , AM160NXGGBH1 AM200HXGGBH1 , AM200NXGGBH1 AM250HXGGBH1 , AM250JXGGBH1 AM250NXGGBH1 , RD160GHXB1 RD200GHXB1 , RD250GHXB1 REMS610B1 , REMS200B1 , RGXG160B1 RGXG200B1 , TGMP450B2N , TGMP560B2N	1588-8395 031-940-2561
		4Y	AM300HXGGBH1 , AM300JXGGBH1 AM300NXGGBH1 , AM320NXGGBH1	
	LG	D4BB	GPUW161B2S , GPUW201B2S , GPUW251B2S GPUW280C2S , GPUW300C2S , GPUW301B2S GPUW320C2S	
		Nu	GPUW161C2S , GPUW201C2S , GPUW251C2S	
	삼천리	4GPK88	KNCP850K	
(주)에코앤드림	삼천리	4GPK88-HU	KNCP850K1 , KNCP710K1	02-2029-7029

저감장치 제작사	가능모델			연락처
	제조사	엔진형식	모델명	
(주)알오씨 오토시스템	삼성	3Y	AM160NXGGBH1 , AM200NXGGBH1 AM250JXGGBH1 , AM250NXGGBH1 AM160HXGGBH1 , AM160HXGGBH3 AM200HXGGBH1 , AM200HXGGBH2 AM200HXGGBH3 , AM250HXGGBH1 RD160GHXB1 , RD160GHXB2 RD200GHXB1 , RD200GHXB2 RD250GHXB1 , RD250GHXB2 RGXGVT160B1 , RGXGVT200B1 REMS160B1MA , REMS160B1MAG REMS200B1MA , REMS200B1MAG TGMP450B2N , TGMP450B2NFK TGMP560B2N , TGMP560B2NFK TGMP710D1NFK	031-270-6358
		4Y	AM300HXGGBH1 , AM300NXGGBH1 AM320NXGGBH1 , AM300JXGGBH1	
	LG	D4BB	GPUW161B2S , GPUW161B2SM GPUW161B2S.AKOR , GPUW201B2S GPUW201B2SM , GPUW201B2S.AKOR GPUW251B2S , GPUW251B2SM GPUW251B2S.AKOR , GPUW301B2S GPUW301B2SM , GPUW280C2S GPUW300C2S , GPUW320C2S	
		Nu	GPUW161B2S , GPUW161B2SM GPUW161B2S.AKOR , GPUW201B2S GPUW201B2SM , GPUW201B2S.AKOR GPUW161C2S , GPUW201C2S , GPUW251C2S	

저감장치 제작사	가능모델			연락처
	제조사	엔진형식	모델명	
(주)세라컴	삼성	3Y	AM160NXGGBH1 , AM200NXGGBH1 AM250JXGGBH1 , AM250NXGGBH1 AM160HXGGBH1 , AM160HXGGBH3 AM200HXGGBH1 , AM200HXGGBH2 AM200HXGGBH3 , AM250HXGGBH1 RD160GHXB1 , RD160GHXB2 RD200GHXB1 , RD200GHXB2 RD250GHXB1 , RD250GHXB2 RGXGVT160B1 , RGXGVT200B1 REMS160B1MA , REMS160B1MAG REMS200B1MA , REMS200B1MAG TGMP450B2N , TGMP450B2NFK TGMP560B2N , TGMP560B2NFK TGMP710D1NFK	02-744-1777/ 02-6929-1777
		4Y	AM300HXGGBH1 , AM300NXGGBH1 AM320NXGGBH1 , AM300JXGGBH1	
	LG	D4BB	GPUW161B2S , GPUW161B2SM GPUW161B2S.AKOR , GPUW201B2S GPUW201B2SM , GPUW201B2S.AKOR GPUW251B2S , GPUW251B2SM GPUW251B2S.AKOR , GPUW301B2S GPUW301B2SM , GPUW280C2S GPUW300C2S , GPUW320C2S	
		Nu	GPUW161B2S , GPUW161B2SM GPUW161B2S.AKOR , GPUW201B2S GPUW201B2SM , GPUW201B2S.AKOR GPUW161C2S , GPUW201C2S , GPUW251C2S	

※ 인증심사(계획) 등에 따라 저감장치 및 지원모델 변경 가능

[서식 1]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상호(사업장명)				성명(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주 소							
대상 G H P	제조사	모델명(제품명칭)	제조번호	엔진모델명	제조년월	용량(출력)		
저공해조치 신청대수				총 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확인				O / X		제작사명 :		
위 GHP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이행확인서(양식참조) 1부 2.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서식 2]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저감장치 설치 후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2년 이내 GHP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GHP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3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3]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익년부터 2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 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저감장치 부착업체, 업무대행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일 일

성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청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지급 신청 내용	구 분	합계	GHP				
			삼성 (아이신)	LG	삼천리	기타	
	엔진모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부착 결과	일련번호	사업장명(소유자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년월	가동시간
	1						
	2						
	합계						

신청자 : (인)

남동구청장 귀하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별지 제5호의1 서식) 1부.
2. GHP 수리검사 합격증명서(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1부.
3.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부.(GHP제조사와 저감장치 부착사가 동일할 경우 제조사의 자체 하자(AS) 보증서로 대체 가능)
4.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5.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별지 제5호의2 서식) 1부.
6. 시설소유자 위임장(별지 제5호의3 서식) 1부.
7.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1부.
8.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9. 보조금 반납 협약서(별지 제5호의4 서식) 1부.

[서식 6]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								
제 작 사								
저감장치 정 보								
담 당 자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								
사업장명								
주 소								
담 당 자								
3. GHP 현황								
제 조 사					가동시간			
모 델 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출력)					제조년월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측정 장비	CO							
	NOx							
	O ₂							
	THC							
측정 결과	No	측정일자	측정시간	CO (ppm)	NOx (ppm)	O ₂ (%)	THC (ppm)	rpm
	1							
	2							
	3							
	평균							
	기준	-	-	90	15	-	90	-
측정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 (붙임서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소유자) :				담당자 :		(인)		
소속(설치자) :				담당자 :		(인)		

[서식 7]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		
저감장치 제조사	(주)○○○○○	대표번호	
설치 담당자		연 락 처	
<설치위치> (* 건물 도면 및 위치, 출입 관련 사항 반드시 표기)			
<제어 계통도> (* 중앙 제어기와 GHP 통신계통 표시)			

[서식 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저감장치 제작사)	사업자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시설소유자)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부착내역	GHP	제조사 : 모델 :
	저감장치	제작사 : 인증번호 :
	부착대수	대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9]

보조금 반납 협약서

사업자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시설의 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GHP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GHP 사용기간별 반납율 >

GHP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1. GHP 사용기간은 냉동기검사(GHP 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597호

대부업체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3. 9. 1. ~ 2023. 10. 4.
2. 공고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3. 송달대상

사업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 재 지
대부업	인천남동구 2020-42	디딤돌캐피탈 대부	김*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35, 리더스타워 A동 403호 (간석동)

4. 송달내용
 - 대부(중개)업 등록자는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5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6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19.(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김*기	인천84바**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70번길 70-11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춘	인천99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01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영	인천99아**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55번길 37-11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가*희	인천84바**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00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수	인천99아**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67번길 31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심*진	인천81바**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7번길 20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유*수	인천84바**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56-3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규	인천84바**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43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배*영	인천81바**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80-52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배*영	인천81바**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80-52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유*문	인천83사**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송*모	인천83바**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운	인천84바**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전*규	인천99아**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4번길 16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녀	인천84바**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75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혁	인천85자**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96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송*칠	인천83바**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37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서*원	인천84바**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도	인천84바**8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94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F. 032-453-2919)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4.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05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1.

남 동 구 청 장

1. 지정내역

구 분	지 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사방 사업지	인천 남동구 장수동 1-17 외 4필지	883,396	1,257	계류보전

※ 상세내역 붙임 1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도면 : 붙임2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임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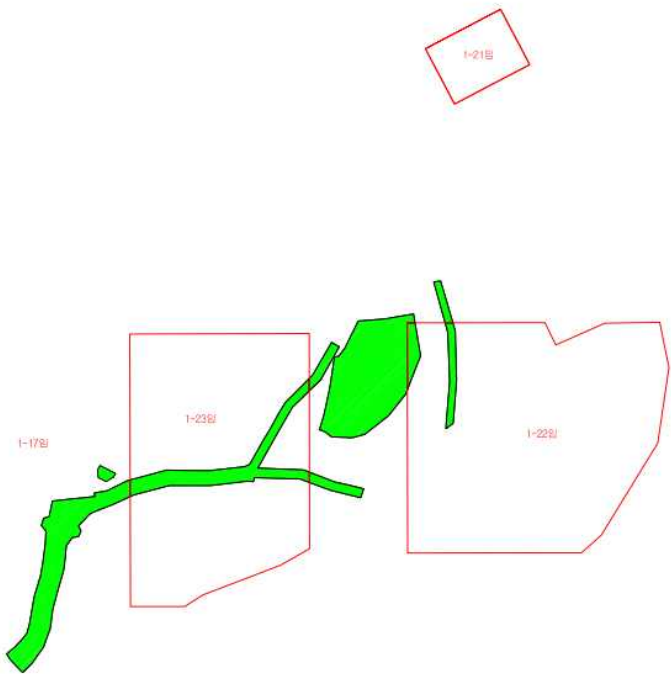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2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사방지지정구역도면



<보기>

 : 사방지

※ 위 도면은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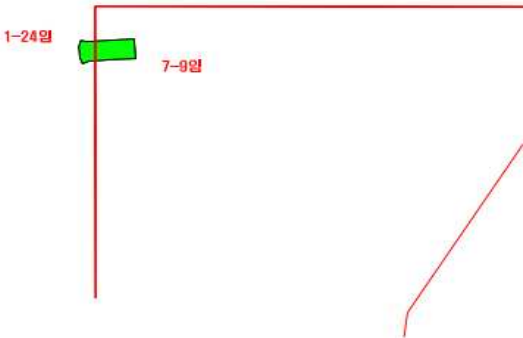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인천 남동구 장수동	1-17	임	556,702㎡	908㎡	남동구고시 제2023-105호 (2023.8.31.)
인천 남동구 장수동	1-22	임	3,458㎡	84㎡	
	1-23	임	2,907㎡	210㎡	
계	3필지		563,067㎡	1,202㎡	
	이	하	여	백	

297mm×420mm[백상지 80g/㎡]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사방지지정구역도면



<보기>
[Green Box] : 사방지

※ 위 도면은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면임.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인천 남동구 장수동	1-24	임	312,085㎡	16㎡	남동구고시 제2023-105호 (2023.8.31.)
인천 남동구 장수동	7-9	임	8,244㎡	39㎡	
계	2필지		320,329㎡	55㎡	
	이	하	여	백	

297mm×420mm[백상지 80g/㎡]

사방지지정내역

연번	행정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계				883,396	1,257		계류보전
1	장수동	1-17	임	556,702	908	국(국방부)	계류보전
2	장수동	1-22	임	3,458	84	국(국방부)	
3	장수동	1-23	임	2,907	210	국(국방부)	
4	장수동	1-24	임	312,085	16	국(국방부)	
5	장수동	7-9	임	8,244	39	국(국방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0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150번길 20-1 (논현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45번길 4-1 (남촌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150번길 20-1 (논현동)	2023.8.28.	에코중앙로 150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9.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50번길 20-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150번길 19 (논현동)	2023.8.28.	에코중앙로 150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9.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50번길 1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45번길 4-1 (남촌동)	2023.9.1.	전체해체	